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성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05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6.

발 의 자:이성만·김남국·김민철

김병주 · 신현영 · 오영환

이수진 • 이원택 • 임오경

임호선 · 장경태 · 정청래

주철현 · 최혜영 · 한준호

홍성국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 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 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62조 의21제3항).

법률 제 호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2조의21제3항 중 "저리"를 "저금리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2조의21(인력개발 및 지역정	제62조의21(인력개발 및 지역정
착) ① ~ ② (생 략)	착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정부는 지방중소기업 소속	③
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	
위하여 지방중소기업의 사업장	
에 취업하여 그 지역에 정착하	
려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	
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	
기 <u>저리</u> 의 정착자금을 융자할	<u>저금리</u>
수 있다.	
④ ~ ⑤ (생 략)	④ ~ ⑤ (현행과 같음)